

4. 이용요금

1)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요금표)에 대한 일반대상자 15%, 의료수급자 7.5%, 기초수급자 0%입니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 방문요양(방문시간당) 이용료

등급	2023년 수가 (평균 %인상)	요 금		
		일반요금(15%)	의료수급자(9%)	기초수급자(6%)
30분	16,190	2,429	1,457	971
60분	23,480	3,522	2,113	1,409
90분	31,650	4,748	2,848	1,899
120분	40,280	6,042	3,625	2,417
150분	46,970	7,046	4,227	2,818
180분	52,880	7,932	4,759	3,173
210분	58,930	8,840	5,304	3,536
240분	65,000	9,750	5,850	3,900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야간가산 : 18~22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20% 가산
- ※심야가산 : 22~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휴일가산 :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 가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2인분의 요금을 받습니다.

- 방문목욕 이용료

등급		2023년 수가		요 금		
		1시간	40분	일반요금(15%) (%)40분	의료수급자 (9%)	기초수급자 (6%)
차량 이용	차량 내	82,160	65,730	9,860	5,916	3,943
	가정 내	74,070	59,260	8,890	5,333	3,556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3) 기타

가)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입니다.

나)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요금 지불 방법

요금의 지불 방법은 매월 월말 합계로 해 다음달 10일까지 당월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청구한 달의 30일까지 **농협 351-0871-8499-33 편한마음재가**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